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광주지방검찰청
목포지청
전문공보담당자 형사 1부장 신승우
전화 061-280-4308 / 팩스 061-280-4520

보 도 자 료

2020. 9. 11.(금)

자료문의 : 형사1부장실
전화번호 : 061-280-4308

제 목	신안군수 채용 비리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☑ 제7조 및 제8조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(제11조 제2항 제3호, 제12조 제1항 제2호, 제2항 제1호 다목)

- 목포지청(지청장 유종완)은 금일(9. 11.)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,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**신안군수 박우량**, 이에 가담한 신안군 공무원 2명, 신안군 산하단체 대표이사 1명을 **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**하고, 그 과정에서 신안군수 박우량의 압수물 훼손혐의와 담당 공무원의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를 입건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음

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1 피고인

- 박우량 [64세, 신안군수('18. 6. 당선, '06. 10.~'14. 6. 신안군수 재직)]
- A○○ [48세, 신안군 공무원]
- B○○ [47세, 신안군 공무원]
- C○○ [66세, 신안군 산하단체 사단법인 甲 대표이사]
- D○○ [58세, 신안군 공무원]

② 공소사실 요지

1. 피고인 박우량, A○○, B○○

- ’20. 1.~2. 공모하여, 설립 예정인 신안군 미술관 전시품 기증 대가로 면접위원들에게 평택 소재 치과의사의 여동생 a, b를 채용하도록 지시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**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청탁금지법위반]**

2. 피고인 박우량

- ’19. 6.~10. 사전에 c에게 채용 계획을 알려주고 면접위원들에게 c를 채용하도록 지시하여 바둑전문 임기제공무원(8급)으로 채용 **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지방공무원법위반]**
- ’20. 2. 인사 계장을 통해 면접위원들에게 선거를 도와준 측근들의 친인척 d, e, f 등 이름·연락처를 전달, 채용하도록 지시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**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청탁금지법위반]**
- ’19. 8.~’20. 2. 사전에 담당 과장 등을 통해 채용 계획을 알려주고, 면접위원들에게 선거운동원, 군의회 의원, 부하공무원의 조카 g, h, i를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**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청탁금지법위반]**
- ’20. 6. 군수실 압수·수색 과정에서 자필로 청탁자들의 성명이 기재된 채용 내정자들의 이력서가 발견되자 이를 빼앗아 찢음 **[공용서류손상]**

3. C○○ [업무방해]

- ’20. 3.~4. 박우량의 청탁을 받아 선거운동을 도와준 측근의 딸 j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단법인 甲의 청년근로자로 채용하여 채용업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乙의 업무를 방해

4. D○○ [공무상비밀누설]

- ’19. 9.~10. 조각가 k로부터 작품을 매입하면서 사전에 공무상비밀인 매입 예정금액(9억 5,000만원)과 미술품구입심의위원 명단을 알려줌

Ⅱ 수사 경과

- ’20. 4. 수사착수(대검 진정서 이첩)
- ’20. 6.~7. 신안군청 등 압수수색, 관련자 조사

※ 군수실에서 박우량이 청탁자들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한 채용 내정자들의 이력서 등이 압수되어 수사가 본격화됨

- ’20. 8.~9. 피고인 박우량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/ 기각

※ 주거일정,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없음 사유

- ’20. 9. 11. 피고인 박우량 등 5명을 불구속 기소

Ⅲ 이 사건의 의의

- 이 사건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유형의 채용비리를 밝힌 사례로,

- 본건 수사를 통해 임기제 공무원, 기간제 공무원 채용 절차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공개채용 절차이나,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2단계로만 구성되어 있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여 채용비리에 노출될 위험이 큰 구조임을 확인하였음

- 검찰은 향후 ▸전라남도, 감사원 등 감독기관이 부정채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,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고질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도록 하고, ▸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임 ▨